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안 제5조).
-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결격사유, 주얼리업자의 지위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 등의 신고, 등록취소 사유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 우수 주얼리 및 주얼리기업 평가 선정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II. 검토의견

1. 주얼리업자 등록취소 사유 구체화

- 안 제11조제1항제4호는 ‘제31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법거래, 탈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취소는 국민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법거래, 탈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제정안과 같음)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정안과 같음)
3.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	3. ----- -----

제 정 안	수정의견
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제31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법거래, 탈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같은 조 제4호</u> ----- -----.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 경우 6. 주얼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 주얼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를 범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 등 정비

- 안 제25조제1항은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5조제2항은 전담기관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중 제7호(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는 전담기관 지정 목적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1) 안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이 법에서 주얼리업자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산업통상부의 의견²⁾을 반영하여 ‘주얼리산업의 투명화와 관련된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으로 수정함.

3. 행정조사 범위 최소화 등

- 안 제29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업자에게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2조제1항제5호).
- 그런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요건(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과 범위(주얼리의 거래 사실)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³⁾,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2) 산업통상부는 안 제3조제4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의 일환으로 설명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9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업자에게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주얼리업자는 30일 이내에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9조(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얼리업자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 ----- -- <u>관련 사실에 대한</u>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의 사항

- 안 제19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알선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23조는 주얼리기업 명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얼리기업의 범위가 부재하고, 이 법의 등록대상인 주얼리업자와 주얼리기업 간에 관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문 표현을 수정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